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0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문대림・김 윤・문금주

황운하 • 강득구 • 김영호

이병진 • 이원택 • 양문석

윤준병·임호선·주철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의 활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임에도 기존 농업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 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 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생 략)	제25조(금융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원
	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
	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
	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u>을 할 수 있다.</u>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